'27년~28년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 일정(안)

구 분		일 자	비 고
공 고 일		11. 2(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 [시행령 제35조 4항4호]
입찰참가신청	중부권	11. 3(화)~11. 9(월)	**서울**, 남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 **강원**, **충북** (7개)
	남부권	11. 4(수)~11.10(화)	**대전세종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 경북, **부산울산**, **경남**, **제주** (8개) ※서버 과부하 방지를 위해 2개권역 분리
입찰서 제출 (투찰) ※ 동시 개찰 변경 가능	중부권	11. 3(화)~11.10(화)	개찰 : 11.10(화) ※18시 중부권 동시개찰 시행
	남부권	11. 4(수)~11.11(수)	개찰 : 11.11(수) ※18시 남부권 동시개찰 시행
적격심사 자료제출	자료요청	11.12(목)	1차사업소
	제출마감 보완마감	11.18(수) 11.23(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이상 (보완시 +3일이상)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 1항]
적격심사	심사완료	11.25(수)	제출마감일로부터 7일이내 (필요시 +3일이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 2항]
	결과제출	11.26(목)	1차사업소 → 중점사업소
낙찰예정자 중복낙찰제한 심사		11.27(금)	중점사업소
이의제기		11.30(월)~12. 2(수)	부적격 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영업일) [계약예규 제9조 1항]
재심사		12. 3(목)~12. 7(월)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3일이내 (영업일) [계약예규 제9조 1항]
재심사 결과 제출		12. 8(화)	1차사업소 → 중점사업소 (중복낙찰제한 2차 심사 포함)
낙찰예정자 통보		12. 9(수)	1차 사업소
인원 및 장비 실사		12.10(목)~12.18(금)	낙찰예정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7.바]
낙찰통지 및 계약체결		12.21(월)~12.31(목)	낙찰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

※ 중점사업소 : 본사에서 지정한 1차 사업소 12개(1개 특별시·도내에 2개 이상의 1차사업소가 있는 경우 1곳만 지정)
※ 관리사업소 : 중점사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소재지에 공사현장이 있는 1차사업소 15개

참고 공고, 적격심사 등 기간 관련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심사자료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심사방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4조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재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부터 3일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